

2003 대구참여연대 5차 정기총회

일시: 2002년 2월 7일(금) 오후 7시

장소: 천주교 범어성당 마리아관

식순

1부 : 정기총회

▶ 개회선언 및 대회사

▶ 일반 현황보고

1. 사업 및 일반 현황 보고
2. 2002년 결산 보고
3. 2002년 감사 보고

▶ 안건심의

1. 2003 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2. 2003 년 예산안 승인의 건
3. 정관개정의 건
4. 정기회비 인상의 건
5. 임원선출의 건

2부 : 친교의 시간

■ 보고

○ 2002 년 활동보고

- 2월 7일 2002 지방선거 3대 유권자 운동 발표기자회견
- 2월 14일 한국마사회는 제 2TV경마장 건설 계획 철회 촉구 및 시민행동 (-8월까지)
- 2월 19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회원 행동의 날 (40명 참가)
- 2월 20일 결식학생 급식지원 예산편성 촉구 기자회견
- 3월 13일 신입회원 입회식(3월 5월 총 2회 진행)
- 3월 18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원 게릴라 방청
- 3월 21일 1회 회원 포럼 '아웃사이더 홍세화의 세상읽기'(70명 참가)
- 3월 23일 권리찾기 119 1탄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 거리 캠페인(총 3회 캠페인 및 상가 방문 설명회 개최)
- 3월 25일 문화갑시장 비자금 조성 1차 규탄 집회 (5월 11일까지 진행) 이후
기자회견 2회/1인 릴레이시위 10회/집회 12회 사법처리 및 시장직 사퇴 서명운동 1200명 참가
- 4월 11일 창립 4주년기념 행사개최
- 4월 18일 제9기 시민아카데미 (-26일까지 총 5개강좌 / 30여명 참가)
- 4월 25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 공약 만들기 회의 개최
- 4월 26일 김대중 대통령 아들버리 진상규명 촉구 거리캠페인
- 4월 26일 비정규직 권리찾기 행동주간 (5월1일까지)
- 5월 9일 대구시립합창단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
- 5월 15일 2002 지방선거 보건·복지·여성 시민공약 선정 토론회
- 5월 18일 권리찾기 119 2차 캠페인 - STOP 카드 캠페인 시작
- 5월 19일 회원 답사 (고령일대 50명 참가)
- 5월 20일 6.13 대구시, 군, 구 기초의원 출결 현황 공개
- 5월 21일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 사업 특혜의혹과 예산낭비관련 청도군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소
- 5월 23일 정책선거 실현과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실현을 위한 대구시장 후보자
대시민 약속운동 진행(조해녕 후보 서명 불참)
- 6월 5일 6.13 지방선거 유권자 위원회 개최
- 6월 7일 "깨끗하지 못한 후보 및 주요 정보공개 대상 후보" 발표 기자회견 개최
- 6월 9일 2001년 대구광역시 시군구 관공비 분석결과 발표
- 6월 20일 나눔 만찬 개최
- 7월 11일 2회 회원 포럼 '월드컵열기와 지방선거를 통해본 한국사회' (40여명 참가)
- 7월 12일 대동은행 소액주주운동 소송 건 대법원 상고 기각
- 7월 15일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캠페인 진행(관련자 고발)
- 8월 3일 제 5회 회원하계캠프 진행(150여명 참가)
- 8월 20일 제1회 지방자치 예산학교 개최 (9월 2일 까지 총5개 강좌 / 50여명 참가)
- 8월 20일 대구시청 기자실 고스톱사건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실 개혁 캠페인 진행
- 8월 21일 시민단체지원 인터넷 사이트(기부몰) 대구지역 조인식 (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

- 9월 5일 공공기관 기자실 개혁 긴급 토론회 개최
- 10월 5일 5·18 및 인권·평화 사회참여학습 대구 교사연수 교육 실시
- 10월 10일 지방행정의 개혁 : 서구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 간담회 개최(영국/네덜란드/일본)
- 10월 12일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대구시민 추모 문화제
- 11월 2일 박원순 변호사 초청특강(대학생회(준) 주관/80여명 참가)
- 11월 12일 대학내 부채자 투표 참여운동(-12월4일까지)
- 11월 18일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제공한 KT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분쟁조정신청
- 11월 20일 제 10기 시민법률아카데미 개최 (12월 13일까지 총4개 강좌/20여명참가)
- 11월 21일 부당 버스요금 인상철회 촉구 기자회견
- 11월 22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의견 발표
- 11월 25일 대구대선 유권자 연대 발족(부정선거고발창구 개설)
- 12월 3일 2003년 대구시에산안 평가보고서 발표
- 12월 8일 살인미군 무죄판결 규탄과 SOFA전면 재개정을 위한 회원 행동의 날 (60여명참가)
- 12월 14일 살인미군 무죄판결 규탄과 SOFA전면 재개정을 위한 1만인 대행진 참가
- 12월 20일 2002 회원송년의 밤 개최
- 12월 26일 2002 대선평가 토론회 개최
- 12월 31일 살인미군 무죄판결 규탄과 SOFA전면 재개정을 위한 1만인 대행진 참가

○ 일반 현황보고

구분	2001	2002	비고
회원수	1300명	1557명 (257명 증가)	2001도 회원가입 187명
회비납부비율	627명(48.2%)	779명(50%)	
자동이체(CMS회원)	552명	700명(148명증가)	
월평균 회비납부액	5,200,600원	6,583,300원	2002년 12월 회비수입7,053,000원

○ 각종사업현황보고

구 분	현 황	비 고
정보공개 청구	54 건	정보공개 자료실 신설 예정
시위 및 캠페인	61 회	10일중 1.7일 캠페인 진행
토론회 개최	4 건	
상답	496	
제보	63 건	
공익소송 및 고발	소송 3건 / 고발 1건	2건은 현재 진행중
공공기관 참여	1 건	대구시정 평가위원회
성명 및 논평 발표	91 회	4일 마다 1회 발표
회원통신문	12 회	월 1회
메일 메거진	44 회	통합누계 95호 발행
회원사업	13 회	회원포럼 (2회 포함)
시민교육사업	4 회	교사 평화 인권 교육1회 시민아카데미 2회 / 예산학교 1회
국제교류사업	1 건	
각종 재정 사업	2회(나눔만찬 / 추석물품판매)	대선등의 상황으로 재정사업 축소
자원 활동가	45명	샌드위치 교육생 9명 포함
상근 활동가	8명	권혁장 사직 강금수 휴직

○ 2002 주요연대 사업 현황 보고

- 여중생 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농성단장 / 공동집행위원장 참가 - 현재 진행중)
- 비정규직 공대위(집행위원단체 - 진행 중)
-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참가단체 - 진행중)
- 중앙지하상가 공대위(공동간사단체 참가-진행중)
-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참가단체-진행중)
- 교육소비재 합리화 대책위원회(총무단체- 진행중)
- 대구경북 공무원 공대위(상임대표/집행위원 단체 -종료)
- 2002 대구대선유권자연대 (집행위원장 단체 참가- 종료)
-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 정상화 시민행동(공동간사단체-종료)
- 2002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허미옥간사 파견 - 종료)
- 2002 지방선거 보전 복지여성 시민공약추진본부(간사단체 - 종료)
- 중국인 노동자 고형군씨 산재사망 공대위(참가단체- 종료)
- 문화집시장 사범처리 촉구 시민행동(간사단체- 종료)

○ 2002 주요사업 추진 실적

주요사업	추진실적	비고
조직 발전 과제 선정	3개 회원모임 시범 프로젝트 진행중	5차 총회 주요안건 상정
후보자 바로 알기운동	"깨끗하지 못한 후보 및 주요 정보공개 대상 후보" 발표	
후보자 공약검증사업	시민 공약안 발표 및 서약운동 진행	조해녕 시장 및 주요 후보자 불참
공천모니터운동	중구/남구청장 후보경선 모니터진행	모니터 감시 방식의 한계 확인
언론개혁운동 기반조성	기자실개혁운동 / 참언론 시민시민연대 활동가 파견을 통한 지원활동	언론운동단체 태동 예정
회원교육사업	회원포럼 2회 진행 / NGO 활동가 양성학교 진행 중	상반기에 집중
정치인 인력자료실 설치	6.13지방선거에서 1차 시행	2차 개편 준비중
권리찾기 119 캠페인	상가임대차 보호 캠페인 / STOP 카드 캠페인진행	카드 공익 소송 중
소비자 권리찾기 캠페인	개인정보유출 공익소송 추진중	
사회권확보 조례제정운동	노인교통수당 조례 진행 안됨 / 급식비 지원조례 문제제기에 그침	
행정권리찾기 운동	추진되지 못함	
홈페이지 개편	1차 개편 완료(5월)	
조직위원회 신설	신설 운영 중	
회원확대운동	목표 700명중 257명 가입	36.5% 달성
상근 활동가 급여인상	간사 급여 100,000원 부장 급여 50,000원 인상 부분인상	
학운위 출마운동	25명 출마 7명 당선	후속작업진행
주민자치위원 참가운동	진행 되지 못함 / 2003년 현재 1명	
5대 조례 제정 운동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나머지는 계속 계류 중	
시민교육사업	참여연대 전문형 사업으로 추진/예산학교/교사 평화인권학교/NGO활동가 학교/시민법률학교 2회 진행	주요교육사업의 경우 연간사업으로 정착
회원의 가게 설치 운영	총 10호점 운영 중	

■ 안건 1. 2003 년 주요사업계획 승인의 건

○ 의안 상정의 근거

정관 제11조(총회의 기능) 5항 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 주요사업방향

- 1) 지역사회의 실질적 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참여와 행동
- 2) 자립적 시민운동을 위한 토대 마련과 회원 참여 운동 활성화
- 3) 권력감시운동의 전문화와 정책제언 활동강화.

○ 핵심사업

1)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 주민자치의 토대 구축 사업

▶ 필요성

-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극복과 참여하는 회원중심의 조직운영 시스템의 마련
-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의 필요성
- 참여연대 회원사업 성과의 발전적 계승
- 시민의 생활 현장속에 함께 하는 시민운동상의 정립

▶ 추진방안

- 참여연대 지역 조직 구성 -가칭) 대구참여연대 000 시민회 건설
- 현재 구별 모임 중 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1차 추진(서구/동구/경북지역의 구미)을 통해 추후 확대 가능성 타진
- 참여연대의 풀뿌리 운동 방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지원활동

2)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재정사업의 토대 마련

▶ 필요성

- NGO의 재정 자립을 통한 운동의 지속가능 토대마련
- 고액 기부자 중심의 모금사업이 아닌 개미 군단의 참여와 조직화를 통한 재정마련 원칙실현
- 일상적인 재정사업의 기획과 연구를 통한 모금 사업안의 마련
- 부분적인 공동유통망의 형성을 통한 생활공동체 운동

▶ 추진방안

-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된 가칭) 풀뿌리 재정기획위원회 구성 :
- 모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워크숍등의 개최

3) 권력감시운동의 전문화, 현장화와 정책대안 활동의 강화.

▶ 필요성

가. 전문화 및 정책대안 기능

- 지방권력 감시운동의 핵심을 예산감시를 통한 행정감시운동이라는 모델 정착
- 비판을 뛰어넘는 대안과 함께 가는 활동 모델의 토대 마련
- 감시활동에서 파생되는 정책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에게 정책대안 제시.
- 활동하는 정책자문위원을 확보

나. 현장화

- 회원 및 시민참여의 강화/ 회원조직을 통한 현장 제보 추진

▶ 추진 방안

- 예산 감시 운동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역량 확보와 시민예산안 마련_
- 참여 예산제 실현을 위한 법 제정 운동 및 일상적 예산낭비 모니터
- 시정개혁 과제 선정 및 실현운동전개 -시민참여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지속추진
- 사이버 행정정보공개 자료실 설치 운영

○ 일반 사업 추진 과제

1. 회원참여 사업

- 지역별 모임 및 회원자치모임의 자체활동 및 각종 사회참여 활동지원
- 지역조직 및 기타 소모임간의 교류확대.
- 회원 네트워크 활성화 : 홈페이지를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위한 구조로 강화

2. 자립적 시민운동으로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 실질적인 1700 회원시대 추진(전 회원의 진성 회원화)
- 가칭) “그래 맞아 참여연대가 있잖아” 창립 5주년 후원의 밤 개최(4월 11일)
- 아름다운 가게 추진 준비

3.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모색(대구대 시민사회교육부와 협약체결)

청소년을 위한 NGO 한마당 / NGO 활동가 양성학교 /시민 법률학교/ 예산학교

4. 인권옹호운동

- 권리구제활동 지속
- 공익 소송 사업의 지속적 전개
- 권리 구제 활동의 권력감시로의 연결
- 사회적 약자를 사회 안전망 구축 운동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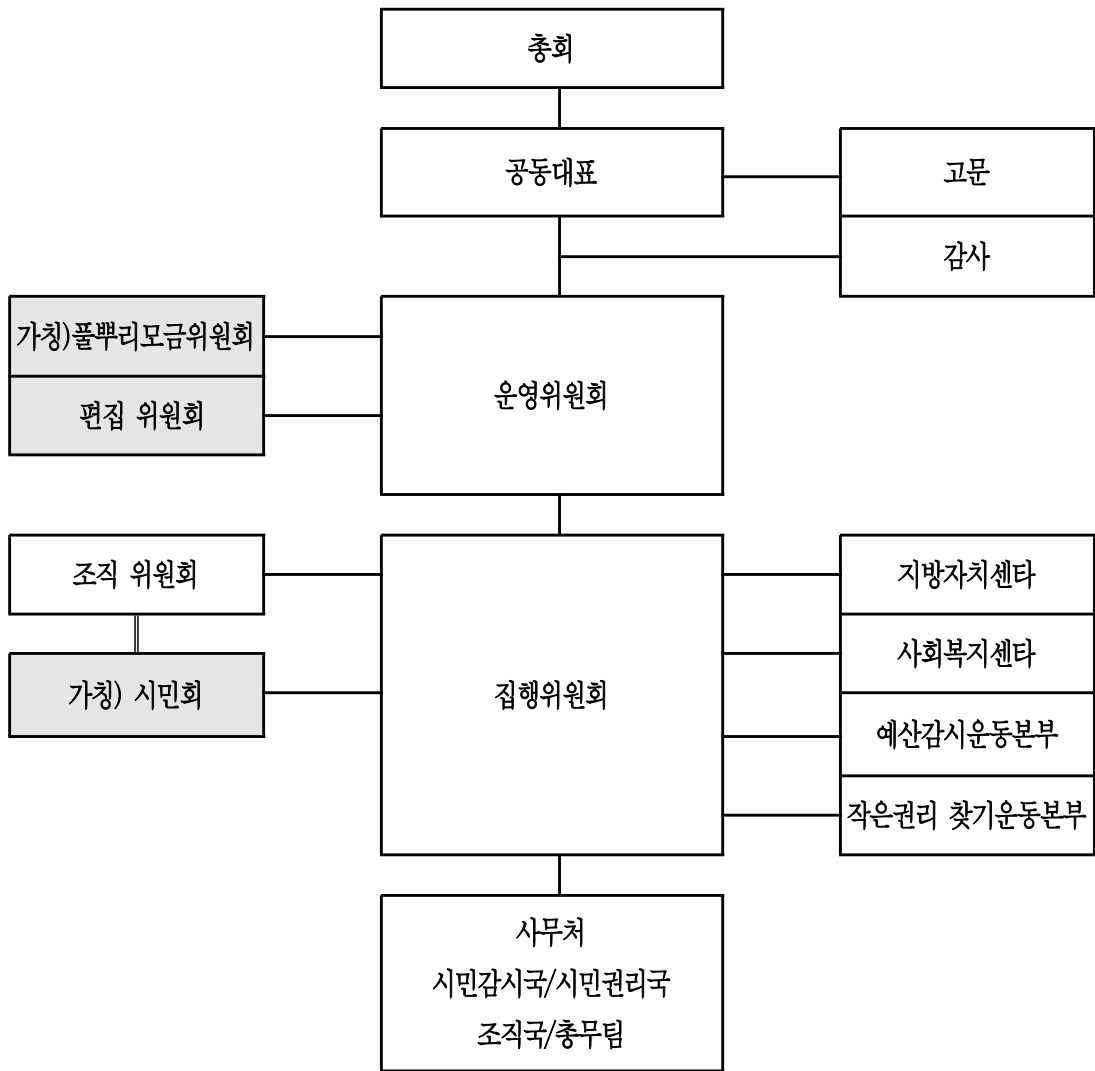
○ 운영 시스템의 정비 및 보완

1. 편집위원회 구성을 통한 회원 통신문의 역할 강화 : 회원의 편집 참여 확대
2. 운영위원회 회원 대표성의 강화를 통한 조직민주주의의 실현
 - 운영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운영 위원 1사업 참가운동 전개
3. 활동기구의 역량강화
 - 회원이 참여하는 조직 및 사업 운영 모델 모색 - 활동기구 회원 모집
 - 활동기구의 자기완결성의 강화 : 총회 - 실행위원회로 이어지는 구조와 활동방식 마련
 - 각 활동기구별 회원참여 및 회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연대사업 기본방향

-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연대와 실천 전개
- 정치개혁 · 경제개혁 · 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개혁 연대사업 참여

○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2003년 조직 개편안



*음영은 사업계획안 승인에 따른 신설 조직

■ 안건 2.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안 상정의 근거

정관 제11조 (총회의 권한 및 의결) 5항 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 2003년 예산 운영의 방향

- 현행 부채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다(수입을 중심으로 한 월별 예산 운영안의 마련)
- 상근 활동가는 현행 8명을 유지한다.
- 주요 사업 예산은 자체 경비 마련을 원칙으로 한다.(회원통신문 예산포함)

■ 안건 3. 정관 개정의 건

○ 의안 상정의 근거 : 정관 제11조 (권한과 의결) 1항 정관의 개정

○ 신구조문 대조표

조 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 (목적)	대구참여연대는 시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유와 정의, 참여자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구현되는 참여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유와 정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구현되는 참여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3조 사업	1.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2. 인권 옹호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의 고발을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 4. 정책개발 및 시민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5. 기타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5.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 6. 기타 대구참여연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신 설 및 조문 변경

○ 정관 개정안의 취지

- 참여연대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권력감시운동 지속추진이라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상정함

■ 안건 4. 정기회비 인상의 건

○ 의안 상정의 근거

정관 38조(수입) 대구참여연대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단 회원회비 기준액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 인상의 필요성

- 2002년 기준 회원가입자 258명중 월 5000원 약정자 80명 (31%)
- 회원 1인당 평균 비용
회원통신문제작 발송 월 466원 / 연간 주요회원사업(창립4주년행사/회원교육사업등등) 연평

균 1인당 15.000원 월 1250원 /월 평균 1.716원 비용 사용

- 시민회 건설등 조직의 변화 과정에서 시민회 자체 회비 운영등으로 인해 회비 인상의 필요
- 2002 년기준으로 할 때 신규가입자 회비 월40만원 연 480만원 수입증대 및 기존회원의 회비 인상 독려등을 통해 현 수준에서 월100만원정도의 회비확대 효과

○ 인상안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원 및 후원회원은 월회비 5,000이상 연회비 5만원이상으로 한다. · 평생회원은 100만원이상 · 자료회원은 월 1만원 이상 연 10만원 이상 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원 및 후원회원은 <u>월회비 10,000이상 연회비 10만원 이상</u> · <u>학생회원은 월 5천원 연5만원이상</u> · 평생회원은 100만원이상 · 자료회원은 월 1만원 이상 연 10만원이상 <u>*단 이의 적용은 2003. 2. 7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토록 한다.</u>

■ 안건 5. 임원 선출의 건

○ 의안 상정의 근거 : 제11조 (총회의 권한 및 의결) 3항 운영 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임원임기(2년)가 종료되지 않았으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을 겸직해온 김민남 공동대표께서 운영 위원장직을 사임 하였음.이에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추가 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함

○ 운영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

- 운영위원회 추천안 : 서대현 회원
- 소개 -- 전 건강사회를 위한 한의사회 회장
 현 전국개원한의사회 회장 (현)
 수경한의원 원장 (현)
 대구참여연대 조직위원장(2002년)

○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건 : 운영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 대구참여연대 정관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대구참여연대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대구참여연대는 시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유와 정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구현되는 참여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대구참여연대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2. 인권 옹호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의 고발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4. 정책개발 및 시민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5. 플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
6. 기타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가입)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신청을 한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대구참여연대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대구참여연대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6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대구참여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2. 대구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대구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별도의 내규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8조 (지위) 총회는 대구참여연대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9조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0조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월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제11조 (권한 및 의결) 총회는 대구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 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4.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제2절 운영위원회

제12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대구참여연대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13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2. 부위원장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와 회원모임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14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15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집행위원장 및 사무처장, 선출직 집행위원의 선출
2.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활동기구의 임원 임명
3. 활동기구 신설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모임의 재정운영에 관한 책임
5. 중요사업에 관한 결정

제3절 집행위원회

제17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대구 참여연대의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들을 추진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제18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및 각 활동 기구의 장 사무처장 및 약간 명의 선출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0조 (기능) 집행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의 집행

2. 각 활동기구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 및 집행
4. 사무처의 설치 운영
5. 운영위원회 출석과 보고의 의무

제4절 공동대표, 고문, 정책자문단, 후원회, 감사

제21조 (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대구참여연대를 대표한다.
2.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1인의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제22조 (고문) 지역사회에서 덕망을 갖춘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3조 (정책자문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문에 응할 각계전문가 약간 명을 정책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4조 (후원회) 재정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 (감사)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할 2인의 감사를 둔다.

제5절 활동기구

제26조 (정의) 활동기구는 대구참여연대의 정관에 근거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를 의미한다.

제27조 (센터)

1. 센터에는 소장 및 약간 명의 부소장, 실행위원, 정책부장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2. 각 센터는 활동에 필요한 회원 또는 협조자들의 활동단위를 둘 수 있다.
3. 각 센터는 단체의 목적과 전체 사업의 취지 범위 내에서 자율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28조 (운동본부)

1. 운동본부는 본부장과 실행위원, 정책부장 및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2. 운동본부는 활동에 필요한 회원 및 협조자들의 활동단위를 둘 수 있다.
3. 운동본부는 단체의 목적과 전체 사업의 취지 범위 내에서 자율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단체의 목적과 전체 사업의 취지 범위 내에서 자율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0조 (활동모임)

1. 모임은 대표와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2. 활동모임은 단체의 목적과 전체사업의 취지 범위 내에서 자율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1조 (활동기구의 신설) 대구참여연대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회원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단위를 둘 수 있다.

제6절 회원 자치 모임

제32조 (자치모임)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회원들의 자율적 자치모임을 둘 수 있다.

제33조 (자치모임의 신설 및 폐지) 자치모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절 사무처

제34조 (구성) 대구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및 약간 명의의 국장, 부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5조 (역할) 사무처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기되는 본회의 사업집행을 수행한다.

제4장 재정

제36조 (회계연도) 대구참여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예산 및 결산)

1. 집행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매년 총회에 다음해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는 예산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집행위원장과 사무처장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입) 대구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단, 회원회비 기준액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 (정당활동 제한) 공동대표, 고문, 운영위원, 집행위원, 사무처장 및 상근 간사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1998년 4월 11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1998년 4월 11일 제정
1998년 12월 19일 1차 개정

2000년 1월 22일 2차 개정

2001년 2월 2일 3차 개정

2002년 2월 2일 4차 개정

2003년 2월 7일 5차 개정

○ 대구참여연대 임원명단